

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

■ 제정사유

- 대통령께서 지난 8.15 「대한민국 50주년」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함에 따라
- 정부에서는 각계각층이 고무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천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므로
- 이에 따라 「제2의 건국」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기능 : 다음사항의 심의·조정
 - 제2의 건국을 위한 지방차원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 -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발굴 및 실천에 관한 사항
 -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
- 구 성 : 25인이내(민·관 합동)
 - 각계각층에서 대표성, 도덕성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- 위원회에는 정수 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
○ 임 기 :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
○ 회 의

-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■ 참고사항

- 제정근거 :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
- 제정표준안 :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지침('98.10.28)

■ 검토의견

-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실천기반을 이루고자 함.
- 위원회의 기능(제2조)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, 제2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, 관련단체와의 협조 등으로 위원회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민·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봄.

- 위원회 구성(제3조)은 25인 이내로 구성토록하였으며 위원은
각계각층의 시민단체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
로 대표성, 도덕성, 전문성 등을 고려 신망도가 높은 인물로
객관성있게 선정, 위원회가 추진하는 개혁과제 실천과 국민운
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-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
형성되어 있는 비합리성, 비능율적인 요인을 제거 기본이 바로
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2의건국 운동 개혁과제가 성공적으로
이루어지도록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이 솔선참여하여 범국
민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
요하다고 생각됨.